

제42조의5(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) ① 본 대학교 총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<신설 2017.9.1.>

②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17.9.1.>

제42조의6(K-MOOC 특별학점 인정) 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K-MOOC(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)를 수강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K-MOOC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<본조신설 2018.3.1.>

제42조의7(학군사관후보생 입영훈련 학점인정) ①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1.]

제42조의8(진로탐색학점제 학점인정) ① 진로탐색제에 따라 자기주도적 진로 활동을 설계 및 수행하고, 이를 이수한 학생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 진로탐색제 학점 인정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3. 1.]

## 제14장 전공결정, 공학교육 프로그램 결정, 부전공, 제2전공 (복수전공, 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)<개정 2007.3.1. 2020.9.1.>

제43조(전공) ① 전공은 제4조에 따라 입학한 학생의 소속 학과(부)의 전공을 주전공(제1전공)으로, 그 외 전공을 제2전공으로 한다. 다만, 융합전공 및 자기설계전공을 이수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주전공(제1전공)으로 할 수 있다.<개정 2009.3.1., 2020.4.1., 2020.9.1.>

② 학부 및 학과군으로 입학한 학생의 전공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43조의2(공학교육 프로그램 결정) 공학교육인증제를 시행하는 학과(부) 또는 전공의 프로그램 결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07.3.1.><개정 2009.3.1., 2022. 3. 1.>

제43조의3(다전공) 다전공이라 함은 입학할 때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2학년부턴 주전공을 둘 이상 선택하여 이수하는 전공을 말한다. 다전공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 신설 2020.9.1.]

**제44조(부전공)** ① 전공학과(부) 이외의 다른 전공의 교과목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**21학점 이상** 취득한 자에게 부전공을 인정한다.

② 삭제 <2011.3.1.>

③ 부전공을 이수하였음을 **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록한다.**

④ 부전공(이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45조(제2전공)** ① 소속 학과(부)의 전공 이외의 다른 전공의 교육과정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소정의 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게는 **복수로 학위를 수여하고 제2전공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예외 학과(부)에 대해서는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.**<개정 2011.3.1., 2020.9.1.>

② 삭제 <2007.3.1.>

## 제9장 부전공 이수

제59조(부전공학과(부)의 설치) **의학과, 간호학과, 음악학과, 약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(부)를 대상으로 부전공을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시설의 수용능력, 학과(부)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.**〈개정 2011.3.1.〉

제60조(지원시기) ① **부전공은 2학년부터** 이수할 수 있다.

② 부전공 이수 지원시기는 매 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한다. 다만, 복학생은 달리 할 수 있다. [본항개정 2007.3.1.]〈개정 2009.3.1.〉

제61조(신청) ①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전공이수신청서(별지서식 제11호)를 소속 학과(부)장을 거쳐 부전공 신청 대상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07.3.1., 2009.3.1.〉

② 삭제 〈2004.8.20.〉

제62조 삭제 〈2004.8.20.〉

제63조(이수학점) ① 부전공학과(부)에서 지정하는 전공과목 중 **21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.**〈개정 2007.3.1., 2009.3.1.〉

② 부전공 지정과목이 전공학과(부)의 과목과 동일할 때에는 전공학과(부) 과목으로만 인정하고, 부전공 지정과목 부족분은 부전공학과(부)장이 지정하는 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제63조2(영어영문학 부전공 이수요건) ① 〈개정 2008.3.1., 2009.3.1.〉 삭제 〈2010.9.1.〉

② [본항신설 2007.3.1.] 삭제 〈2008.3.1.〉

제64조(부전공 취소) 삭제 〈2010.3.1.〉 ① 이수중인 부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부전공 이수 취소원(별지서식 제12호)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〈개정 2007.3.1., 2010.3.1.〉

② 전항의 경우에 이미 취득한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

## 제10장 제2전공 이수〈개정 2009.3.1.〉

제65조(복수전공) ① **각 학과(부)의 전공을 대상으로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. 다만, 의학과, 간호학과, 임상병리학과, 물리치료학과, 작업치료학과, 특수교육과, 유아교육과, 건축학과, 음악학과, 약학과는 복수전공 대상에서 제외된다.**〈개정 2007.3.1., 2009.9.1., 2011.3.1.〉

② **복수전공 신청 시에 3학년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인 학과(부)를 대상으로 한다.**

③ **의학과, 간호학과, 약학과 소속 재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·이수할 수 없다.**

④ **야간과정 학과(부) 소속 재학생은 야간과정 소속 학과(부)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신청·이수할 수 있다.**

⑤ 학과(부)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〈별표 3〉과 같이 학점을 취득하여야 하고,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 이수를 위해서는 〈별표 4〉와 같이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9.3.1.〉

⑥ 공학교육 전문프로그램을 복수전공 하기 위해서는 공학교육전문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인증기준학점(학사운영규정 제9조 제4항, 제10조 제5항)을 취득하여야 한다.〈개정 2009.3.1.〉

1. 삭제 <2009.3.1.>
  2. 삭제 <2009.3.1.>
  3. 삭제 <2009.3.1.>
  4. 삭제 <2009.3.1.>
- ⑦ 교직복수전공은 교원 양성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<신설 2017.9.1.>
- 제65조의2(연계전공) 삭제 <2020.9.1.>
- 제65조의3(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연계) ① 본 대학교 학부 재학생은 대학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.
- ② 대학원 교육과정과의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- 제65조의4(자기설계전공) ① 학생은 자기설계전공 관련 지도교수의 자문을 받아 전공명, 교육과정, 학위명 등을 설계하고 이에 대해 전공제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개정 2007.3.1., 2010.3.1., 2013.3.1., 2020.3.1. 2020.9.1.>
- ② 자기설계전공의 이수학점은 아래 각 호와 같다.<개정 2020.9.1.>
1. 삭제 <2020.3.1.>
  2. 삭제 <2020.9.1.>
  3. 삭제 <2020.9.1.>
  4. 자기설계전공을 주전공(제1전공)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66학점 이상,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33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9.1.>
- ③ 삭제<2020.3.1.>
- ④ 자기설계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<신설 2007.3.1.>
- 제65조의5(융합전공) ① 융합전공은 아래 각 호와 같이 둔다.
1. 문화콘텐츠전공<개정 2020. 6. 9.>
  2. 바이오산업인허가전공<개정 2020. 6. 9.>
  3. 의료기기규제과학RA(Regulatory Affair)전공<개정 2020. 6. 9.>
  4. 의생명공학전공 <2020.9.1.>
  5. 일본학전공 <신설 2020.9.1.>
  6. 건강처방학전공 <신설 2020.9.1.>
  7. 경찰행정학전공 <신설 2020.9.1.>
  8. 원자력응용공학전공 <신설 2020.9.1.>
  9. 헬스케어서비스디자인전공 <신설 2020.9.1.>
  10. 글로벌벤처창업학전공 <신설 2020.9.1.>
  11. 의료관광서비스경영전공<신설 2020.9.1.>
  12. 마케팅전략기획전공 <신설 2020.9.1.>
  13. 음악치료전공 <신설 2020.9.1.>
  14. 소방재난관리전공 <신설 2020.9.1.>
  15. 글로벌스포츠코칭전공 <신설 2020.9.1.>
  16. 통일학전공 <신설 2020.9.1.>

17. 인당글로벌리더스전공 <신설 2020.9.1.>

18. 융합기술공학전공<신설 2022. 3. 1.>

② 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33학점 이상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③ 융합전공을 제1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66학점 이상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④ 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0.9.1.>

[본조신설 2020. 4. 1.]

제65조의6(USG융합전공) ① USG융합전공(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융합전공)은 아래 각 호와 같이 둔다.

1. 스마트기계설계해석전공

2. E-Mobility전공

3. 지능로봇전공

4. 스마트제조ICT전공

5. 스마트도시·건설전공

6. 공동체혁신전공

7. 미래모빌리티전공<신설 2022. 3. 1.>

8. 저탄소그린에너지전공<신설 2022. 3. 1.>

② USG융합전공을 제2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은 최소 33학점 이상의 이수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.

③ 동 규정 제70조 제1항에 불구하고,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과 USG융합전공 교과목이 동일하다고 인정할 경우 USG융합전공의 학점으로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졸업학점으로 이중 계산하지 아니한다.

④ USG융합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1. 7. 1.]

제66조(신청절차) ① 제2전공은 3학기부터 7학기 이내 이수신청 할 수 있다.<개정 2007.3.1., 2009.3.1., 2010.3.1.>

② 제2전공은 매학기 개강 전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한다. 다만, 복학생은 달리 할 수 있다.<개정 2007.3.1., 2009.3.1., 2010.3.1.>

③ 제2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2전공 이수신청서(별지서식 제33호)를 제1전공 학과(부)장을 거쳐 제2전공 학과(부)장에게 제출한 후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10.3.1.>

④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복수전공 개시학기부터 2개 학기에 걸쳐 추가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동일학부 내 복수전공자는 제외한다.<신설 2010.3.1., 개정 2018.3.1.>

제67조(소속) 제2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제1전공학과(부)의 소속으로 본다.<개정 2009.3.1.>

제68조 삭제 <2007.3.1.>

제69조 삭제 <2007.3.1.>

제70조(학점인정) ①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과 제2전공의 전공교과목이 동일하다고 교무처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제1전공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되, 당해 교과목이 제2전공의 필수과목일 경우에는 중복이수를 억제하기 위하여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2전공에 필요한 최소전공인정학점은 다른 전공선택 교과목을 이수하여 충족하여야 한다.<개정 2007.3.1.>

② 부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이 제2전공으로 이수 신청할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을 제2전공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07.3.1.> <개정 2009.3.1.>

제71조(제2전공 이수 및 허가) 제2전공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별도의 선발과정이나 정원 제한 없이 제2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. <개정 2007.3.1.>

제72조(학위수여) ① 제2전공자가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더라도 제2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,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동시에 학위를 수여한다. <개정 2007.3.1.>

② 제2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라도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. <개정 2007.3.1.>

제73조(중도포기) ① 제2전공 과정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제2전공 이수포기원<별지서식 제15호>을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3.1., 2009.3.1.>

② 전항의 포기원을 제출한 자가 포기원 제출 시 부전공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 부전공 이수신청서<별지서식 제11호>를 제출할 경우 본 규정 제63조를 준용하여 부전공 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07.3.1.>

③ 이미 취득한 제2전공 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07.3.1.>

제74조 삭제 <2007.3.1.>

## 제11장 삭제 <2007.3.1.>

제75조 삭제 <2007.3.1.>

제76조 삭제 <2007.3.1.>

## 제12장 삭제 <2007.3.1.>

제77조 삭제 <2007.3.1.>

제78조 삭제 <2007.3.1.>

제79조 삭제 <2007.3.1.>

제80조 삭제 <2007.3.1.>

제81조 삭제 <2007.3.1.>

제82조 삭제 <2007.3.1.>

## 제13장 전학 및 전과(부)

제83조 삭제 <2009.3.1.>

제83조의2(전전공) ① 음악학과 세부전공간의 전공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